韓國 企業法의 施行經驗과 向後課題*

金 性 倬**

Ⅰ. 序 言

韓國의 企業法制는 經濟開發計劃이 本格的으로 推進된 1960年代부터 그 모습을 갖추기 始作한다. 韓國의 經濟는 이 때부터 비교적 짧은 期間 동안 "漢江의 奇蹟"(Miracle of Han River)이라 부를 정도로 刮目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루었다. 그런데 1997年 11月 外換危機에 의하여 韓國經濟가 總體的인 危機狀況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韓國政府는 當面한 經濟難局을 解決하기 위한 勞力의 하나로 旣存의 經濟關聯法制를 再點檢하고 이를 改革(reform)하는 一連의 作業을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制度改革作業은 企業經營을 透明하게 하고 經濟民主化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韓國의 企業法制를 소위 "國際的 基準"(global standard)에 近接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發表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韓國의 企業法原理와 體系, 그리고 韓國 企業法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그리고 現在 當面하고 있는 課題와 최근의 法改革作業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본다.

---

* 이 글은 嶺南大學校 法科大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南開大學 法政學院과 2000년 10월 17일 天津에서 개최된 제1차 韓中學術會議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영남대학측에서는 남개대학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3개 분야의 주제를 발표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다. 발표된 내용은 한국에서의 民事法, 行政法과 企業法의 施行經驗을 巨視的인 관점에서 槪觀的으로 回顧하고 그동안의 施行過程에서 드러난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었다.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法學博士

Ⅱ. 韓國企業法制의 原理와 體系

1. 韓國企業法의 指導原理

(1) 市場經濟의 原理와 私有財産權의 保障

韓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는 市場經濟(market economy)를 基本으로 한다(憲法 第119條 第1項). 個人의 財産權은 公共福利에 適合하여야 할 義務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私有財産權이 保障된다(憲法 第23條).

個人은 自由롭게 企業을 設立하고(自由設立主義),[1] 經營에 있어서도 國家로부터 統制를 받지 않고 自由롭게 營利行爲를 追求할 수 있는 營業의 自由를 가진다(憲法 第15條 등). 個人과 企業은 原則的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契約自由의 原則(freedom of contract)에 의하여 自由롭게 營利行爲를 追求할 수 있다.

(2) 株式會社法의 基本原理

韓國의 企業法은 合名會社 · 合資會社 · 株式會社 · 有限會社 등 4種의 會社를 인정하고, 이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企業形態를 自由롭게 選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株式會社는 원래 大規模의 會社에 適合한 會社이지만, 現實的으로 韓國에 存在하는 大部分(약 96%)의 會社는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株式會社의 形態를 띠고 있다.

株式會社는 「株主의 有限責任」(limited liability)과 「所有와 經營의 分離」(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를 指導原理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식회사의 法原則이 惡用되어 大株主(소위 "owner")는 회사 위에 君臨은 하지만 經營失敗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않아 그에 따른 被害가 일반 群小株主에게 轉嫁되는 事例가 종종 發生하고 있다.

---

1) 準則主義라고 한다. 準則主義下에서는 一定한 要件만 具備하면 누구나 企業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例外的으로 金融産業 등 몇몇 重要한 公益事業의 경우는 政府로부터 認許可를 받을 것을 要求하고, 鐵道事業 · 담배事業 · 紅蔘事業 등의 경우는 國家의 財政收入을 위하여 國家의 獨占事業으로 하고 있다.

2. 韓國企業法의 體系

企業이 맺고 있는 接觸点은 매우 多樣하다. 企業은 株主, 經營者, 債權者, 勤勞者, 다른 企業, 市場뿐만 아니라, 심지어 地域住民, 環境과도 접촉점을 맺고 있고, 認許可 등 經濟行政規制 · 行政指導 · 租稅 등에 의하여 政府 등 公共機關과도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法律問題가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企業法의 範疇에 속한다. 그러나 보통은 그 범위를 좁혀서 企業의 設立, 資金調達, 經營 및 營業組織, 企業의 擴張 및 再編, 商去來 등을 企業法의 주요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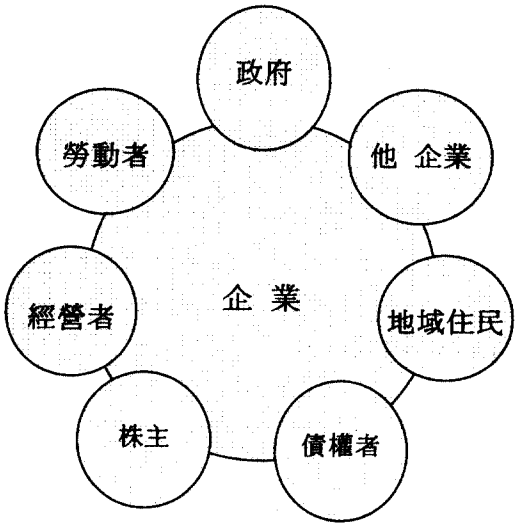

3. 韓國의 主要企業法

(1) 民法과 商法

財産的 去來行爲를 規律하는 한국의 基本法에는 民法과 商法이 있다. 民法은 一般市民이 去來의 主體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物權과 債權 등 財産權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을 담고 있다. 商法은 商人이 去來의 主體인 경우에 適用된다.

民法과 商法은 一般法과 特別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商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民法이 補充的으로 適用된다(商法 第1條). 商法은 商人과 商行爲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會社에 관한 규정(會社法), 어음 手票에 관한 규정, 保險과 海商에 관한 규

정을 담고 있다.

(2) 商事特別法

韓國의 主要 商事特別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들 商事特別法은 民法과 商法에 優先하여 適用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 經濟秩序에 관한 法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② 商去來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한 法 -- 不正競爭防止法, 營業秘密保護法

③ 會社의 更生에 관한 法 -- 會社整理法

④ 會社設立 등 商業登記의 節次에 관한 法 -- 非訟事件節次法

⑤ 證券去來에 관한 法 -- 證券去來法, 證券投資信託業法, 證券投資會社法, 公社債登錄法, 擔保附社債信託法, 資産流動化法

⑥ 銀行業 · 保險業에 관한 法 -- 銀行法, 保險業法, 여신전문금융업법

⑦ 特殊業種에 관한 法 -- 海運法,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등

Ⅲ. 韓國企業法制의 過去(시행경험)

1. 解放以後의 企業法制

1945年 8월 15일 日本의 支配로부터 解放되어 1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後 1963年 商法이 制定되기 前까지 韓國에는 企業法이라고 부를만한 獨自的인 法이 存在하지 않았다. 大韓民國 最初의 大統領인 李承萬 政權은 美國을 모델로 한 市場經濟體制를 韓國에 移植하면서 韓國의 獨自的인 法制를 構築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였으나, 그 結實을 맺지 못하였다.

2. 1960年代, 1970年代의 企業法制 (政府主導型 經濟時代)

韓國이 오늘과 같은 本格的인 企業法制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부터이다. 1962年 朴正熙 軍事政權이 쿠데타에 의하여 政權을 掌握하였고, 이 政權은 政治勸力의 正當

性을 經濟再建과 富國强兵에서 찾았다. 이를 위하여 본격적인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樹立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各種 經濟關聯法制들이 속속 制定되었다.[2]

이 때에 만들어진 經濟關聯法制는 기본적으로 市場經濟(market economy)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市場의 機能이 微弱하였기 때문에 政府의 市場介入(regulation)이 廣範하게 인정되었다. 政府의 市場經濟에 대한 介入 중에는 法에 根據한 것도 있었지만, 例를 들면 行政指導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法에 根據하지 않은 政府介入도 많았다.

이 당시 政府의 市場介入은 政府가 家父長的인 입장에서 經濟의 큰 方向을 企劃하고 限定된 資源을 戰略的인 몇몇 分野에 集中投入하기 위한 것이었다.[3] 이 당시 國民들의 높은 敎育熱, 열심히 努力하여 얻은 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음을 保障받는 私有財産權의 法制, 政府의 獻身的인 經濟開發努力 등이 綜合的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1950년부터 1953년에 걸친 南北戰爭의 廢墟를 딛고 飛躍的인 經濟成長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過程과 結果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도 발생하였다. 政府의 過度한 市場介入에 의한 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사례의 발생, 不均衡成長政策에 의한 大企業集團(財閥)과 中小企業의 極甚한 隔差(獨寡占의 문제), 企業優待政策에 따른 勞動者와 消費者의 權利保護의 상대적 未洽, 國民의 所得隔差에 따른 相對的 剝奪感, 輸出主導型政策에 따른 內需市場의 未發達, 環境侵害事例의 增大 등이 이 당시에 드러난 代表的인 問題點들이다.

3. 1980年代, 1990年代의 企業法制 (民間主導型 經濟時代)

1979年 朴正熙 大統領의 갑작스런 逝去 以後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의 經濟政策과 經濟關聯法制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된다. 우선 政府가 市場介入의 限界를 인식하고 從來의 政府主導型 經濟體制를 民間主導型 經濟體制(market oriented economy)로의 轉換을 試圖하기 始作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政府는 市場介入에 관한 各種 規制法令을 緩和 또는 廢止(deregulation)하고 政府는

---

2) 오늘날 韓國이 누리고 있는 物質的 基礎는 - 그 施行過程과 結果에 있어서 多少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朴正熙 政權의 이 같은 努力에 의한 바 크다는 점에 대해서 韓國人은 대체로 共感하고 있는 것 같다.

3) 이 당시 政府에는 經濟企劃院(Economic Planning Board)이라는 部處가 國家經濟를 總括的으로 企劃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현재는 經濟企劃院이라는 部處는 廢止되었다.

規制 대신 市場의 自由롭고 公正한 競爭秩序(economic order)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1980年代에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4] 制定하고 消費者保護法과 環境保護關聯法을 强化하는 一連의 立法的 對應을 하게 된다.

政府의 市場介入을 緩和하기 위한 法 改正作業은 政府가 처음 標榜한 目標水準에 비하면 未洽하지만,[5] 그래도 이 기간 동안 상당한 成果를 보았다.

Ⅳ. IMF危機 以後 韓國企業法의 改革課題

1997年 外換不足으로 促發되어 韓國經濟가 IMF(國際通貨基金)의 管理體制로 접어들면서 韓國의 經濟政策과 企業關聯法制는 또 다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된다.[6] 經濟危機에 대한 反省으로 韓國은 經濟關聯 특히 企業關聯法制에 重大한 改革을 試圖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마치 外科手術처럼 苦痛이 따르고 時間을 要하는 作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滿足할만한 成果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韓國의 企業과 관련 법제가 현재 안고 있는 課題는 다음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財閥(大規模企業集團)의 問題

韓國經濟에 있어서 財閥(大規模企業集團)의 存在는 格別한 意味를 갖고 있다. 韓國에

---

4) 이 법은 美國의 Sherman Act와 Clayton Act, 그리고 Federal Trade Commission Act를 모델로 하고 日本의 「私的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參照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5) 政府의 市場介入을 緩和하려는 作業에 대하여 政府의 最高位層에서는 상당히 강한 意志를 표시하였지만, 담당 公務員들은 자신의 權限이 줄어들 것으로 憂慮한 나머지 規制緩和에 대하여 積極的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 規制緩和가 遲延된 것은 그 동안 規制에 의한 進入障壁(entry barrier)으로 상대적으로 特惠를 누려왔던 該當 企業이 암암리에 反對한 것도 그 原因의 하나로 指摘되고 있다.

6) 韓國이 外換危機를 맞게 된 原因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分析이 있다. 韓國貨의 高評價, 海外旅行自由化 등에 의하여 外換需要는 增加하였지만, 輸出의 減少 등에 의하여 外換供給이 減少된 것이 그 主된 原因이지만, 外換問題에 대한 정부의 管理能力의 不足도 그 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다. 그리고 企業經營이 透明하지 못하고 大株主(支配株主)의 經營獨走를 牽制하는 裝置가 未洽함으로써 非效率的인 投資가 이루어졌고, 金融産業이 政府의 過保護 속에서 自生力과 商業性을 喪失한 점 등도 그 原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 財閥은 經濟開發 草創期에 政府의 不均衡 經濟成長政策의 産物이다. 財閥에 대해서는 韓國經濟成長의 牽引車(engine)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讚辭와 함께, 財閥 오우너(owner)의 經營獨走와 無分別한 事業擴張, 獨寡占利潤의 享有, 社會可用資源의 非效率的인 配分의 元兇이 되고 있다는 非難을 同時에 받고 있다. 더욱이 IMF 以後 韓國 굴지의 財閥인 大宇그룹, 東亞그룹, 雙龍그룹의 不實化와 現代그룹의 流動性 危機 등으로 財閥에 대한 이 같은 非難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韓國에서 財閥에 대한 法的 規律은 基本的으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에 의하고 있다. 韓國의 公正去來法은 財閥의 經濟力集中을 抑制하기 위하여 「大規模企業集團」(財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좀체 찾기 어려운 한국의 특유한 법제도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대하여 이들 해당기업은 다른 외국의 기업에 비하여 역차별이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당국은 한국경제에서 재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 1> 2000年 指定 大規模企業集團 現況

(單位 : 10億원, %)

企業集團	非金融保險會社						全體 會社		
	資産總額 (A)	資本總額 (B)	負債比率 (C)	自己資本比率(B/A)	負債比率 (C/A)	98년 末 負債比率	資産總額	資本總額	負債總額
1 現代	87,191	34,595	52,596	39.7	152.0	482.8	101,932	34,548	67,384
2 三星	64,777	26,311	38,466	40.6	146.2	252.1	118,697	28,916	89,781
3 엘지(LG)	46,151	18,642	27,509	40.4	147.6	314.5	56,045	20,102	35,942
4에스케이(SK)	39,581	16,959	22,622	42.8	133.4	240.3	41,447	16,908	24,539
1-4大 計	237,700	96,507	141,193	40.6	146.3	328.8	318,121	100,474	217,646
5 韓進	20,399	7,186	13,214	35.2	183.9	458	24,986	7,557	17,429
6 롯데	15,751	8,934	6,817	56.7	76.3	117.8	16,189	8,970	7,219
7(株)大宇	13,144	-17,198	30,341	-	-	-	13,144	-17,198	30,341
8 錦湖	11,171	3,472	7,698	31.1	221.7	558.2	14,342	2,638	11,703
9 한화	11,128	4,801	6,327	43.1	131.8	332.6	12,135	5,074	7,061
10 雙龍	9,617	1,311	8,307	13.6	633.6	1403.3	11,057	1,410	9,647
11 한솔	9,184	3,081	6,103	33.5	198.1	346.2	11,665	3,294	8,371
12 斗山	7,645	2,955	4,690	38.7	158.7	331.8	7,679	2,956	4,723
13 現代精油	7,150	1,597	5,554	22.3	347.8	-	7,150	1,597	5,554
14 東亞	6,496	495	6,001	7.6	1212.3	898.6	6,526	518	6,009
15 東國製鋼	5,648	2,384	3,264	42.2	136.9	198.4	10,685	2,564	8,121
16 曉星	5,708	2,463	3,244	43.1	131.7	281.3	5,957	2,471	3,486
17 大林	5,412	1,940	3,472	35.8	179.0	22.4	6,320	2,202	4,118
18 에쓰-오일	5,495	1,489	4,006	27.1	269.0	-	5,495	1,489	4,006
19 東部	4,975	1,754	3,221	35.3	183.6	27.3	8,443	2,024	6,419
20 코오롱	4,586	1,831	2,755	39.9	150.5	335.3	4,706	1,862	2,844
21 東洋	3,481	1,056	2,426	30.3	229.7	303.2	14,985	1,560	13,426
22 高合	3,691	385	3,305	10.4	858.4	281.3	3,706	382	3,324
23 第一製糖	3,297	1,640	1,657	49.7	101.0	133.2	3,733	1,745	1,988
24 大宇電子	3,525	-1,839	5,363	-	-	-	3,525	-1,839	5,363
25現代産業開發	3,420	1,194	2,225	34.9	186.3	-	3,420	1,194	2,225
26 亞南	3,034	70	2,964	2.3	4234.3	8354.2	3,076	69	3,006
27 새한	3,052	886	2,166	29.0	244.5	276.9	3,052	886	2,166
28 進露	2,910	-1,155	4,065	-	-	-	2,916	-1,150	4,066
29 新世界	2,718	945	1,773	34.8	187.6	-	2,759	929	1,830
30 영풍	2,610	1,382	1,227	53.0	88.8	-	2,646	1,382	1,264
5-30大 計	175,247	33,059	142,185	18.9	430.1		210,297	34,586	175,709
合 計	412,947	129,566	283,378	31.4	218.7	379.8*)	528,418	135,060	393,355

註 : *) 1999年 30大 企業集團의 平均 負債比率임

同一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國內系列社의 資産總額의 合計額이 上位 30位에 속하는 企業集團을 大規模企業集團으로 指定한다.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대해서는 公正去來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制限이 가해진다.

① 系列會社 相互間 出資禁止(同法 第9條 第1項)

② 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禁止 및 旣存 債務保證의 解消(同法 第10條의 2 第1項, 第10條의 3 第1項)[7]

③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同法 第11條)

④ 大規模 內部去來의 경우 理事會 議決의 公示(同法 第11條의 2)

⑤ 出資總額의 制限(同法 第10條 第1項)[8]

法制的인 側面에서 보면, 韓國에서 公正去來法의 財閥에 대한 規制는 다른 外國의 立法例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强力하고 또 嚴格하다. 그러나 이 같은 强力한 制度에도 不拘하고 財閥에 의한 經濟力集中現狀이 고착화하여 좀체 緩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韓國經濟가 안고 있는 苦悶거리의 하나이다.

2. 大株主의 經營專橫에 대한 統制方法의 모색

韓國經濟는 그 發展歷史가 아직 日淺하기 때문에 創業 1世代 또는 創業 2世代가 아직도 經營一線에 健在하고 있다. 이들은 大部分 大株主(支配株主)로서 不毛地에서 맨손으로 企業을 일구어 成功하였다는 自信感에 가득 차 있다. 이 같은 自信感은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으로 작용하여 기업발전에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자칫 無謀한 經營으로 該當企業, 나아가 國民經濟 全體를 어렵게 할 危險性을 동시에 안고 있다.

더욱이 該當企業이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경우에는 大株主에 대한 經營統制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인 現實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株式이 分散되어 一般群小株主(投資者들)는 단지 株式讓渡에 따른 時勢差益을 얻는 데에만 급급하지 企業經營에 대해

---

7) 從前에는 他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을 自己資本의 100% 以內로 制限하던 것을 1998年 4月 1日부터 新規 債務保證을 原則的으로 禁止하되, 旣存의 債務保證은 2000年 3月 31日까지 解消하도록 改正하였다.

8) 從前에는 大規模企業集團 所屬 會社의 出資總額은 純資産額의 25%를 超過할 수 없다는 制限이 있었다. 그런데 從前의 出資總額制限制度가 企業分割, 事業交換 등 企業의 自律的인 構造調整을 制約하고 外國企業에 비해 韓國企業을 逆差別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998年 4月 1日 法 改正時 이를 廢止하였다. 그러다가 1999年 12月 法 改正時 이를 다시 復活시켰다.

서는 대체로 無關心한 傾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M&A 등 資本市場에 의한 經營權統制機能이 아직 未洽하다. 따라서 大株主의 經營專橫에 대한 實效性있는 牽制裝置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最近 다음과 같은 法改革을 하였다.

(1) 少數株主權 强化를 위한 法制改革

大株主의 經營獨走現狀을 是正하고 牽制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구비하기 위하여 最近의 商法改正에서는 少數株主의 權利를 대폭 强化하였다. 그러나 이들 權利行使에 대한 補償體系가 未洽하기 때문에 이처럼 단편적으로 少數株主權을 强化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實效性이 있을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표 2> 少數株主權

	從前 商法	1998年 改正商法	證券去來法
理事·監事·淸算人 解任請求權	5%	3%	0.5% (0.2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理事의 違法行爲 留止請求權	5%	1%	0.5% (0.2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代表訴訟 提起權	5%	1%	0.01% ,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會計帳簿 閱覽權	5%	3%	1% (0.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業務·財産狀態 檢査請求權	5%	3%	3% (1.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株主總會 召集請求權	5%	3%	3% (1.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株主提案權	(없음)	3%	1% (0.5%), 6個月前부터 繼續保有
累積(集中)投票 請求權	(없음)	3%	(없음)
會社解散 請求權	10%	10%	(없음)

註 : 證券去來法의 ( )안은 最近 事業年度 末 資本金이 1千億원 以上인 法人

(2) 理事와 支配株主의 責任 强化

가. 理事의 忠實義務와 業務執行關與者의 責任條項 新設

1998年 한국의 改正商法은 理事의 責任을 强化하기 위하여 理事의 忠實義務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였다(同法 第328條의 3). 또 法律上 理事로 登記되어 있지 않으면서 실제

會社의 經營에 影響力을 행사하는 支配株主(controlling shareholder)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기 위하여 業務執行關與者의 責任에 관한 조항을 新設하였다(同法 第401條의 2).

만약 代表訴訟이 活性化된다면 그 동안 權限만을 누리고 責任은 지지 않았던 理事와 支配株主들도 이제는 더 이상 法的責任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다. 최근 韓國에서는 理事의 責任을 묻는 代表訴訟이 몇 件 提起된 바 있다. 이에 對備하여 責任保險(D/O liability insurance)에 加入하여 이에 대비하는 會社가 늘어나고 있다.

나. 社外理事制度의 導入

證券去來法에서는 理事會를 活性化하고 經營陳의 中立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美國의 社外理事(outside director)制度를 導入하였다. 그러나 학연, 지연 등 "緣"을 重視하는 한국의 文化的 風土에서 社外理事의 中立性과 專門性을 確保하는 것이 여전히 宿題로 남아 있다. 이 制度가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기에는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좀더 時間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市民運動次元의 株主運動

最近 韓國에서는 市民團體가 主軸이 된 株主運動(shareholder movement)이 展開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或者는 市民運動이 당초의 순수한 취지에서 變質될 可能性을 念慮하기도 한다.

그러나 一般 株主가 經營陳에 대하여 責任을 묻는 努力(예: 代表訴訟)에 대하여 아무런 直接的인 補償(incentive)을 賦與하지 않는 現行 法制上으로는 이 같은 市民運動次元의 株主運動은 企業經營의 民主化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나름대로 意味가 있다고 생각한다.[9]

3. 企業構造調整의 課題

그 동안 韓國의 企業은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를 위하여 事業規模를 巨大化하는 데에 力點을 두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非效率的이고 경쟁력이 없는

9) 最近 市民團體의 訴訟提起에 의하여 第一銀行의 銀行長 등 理事의 不實貸出에 대하여 400億원의 賠償判決을 얻어낸 것은 그 可視的인 成果의 하나이다. 그 以前까지만 해도 商法上의 代表訴訟제도는 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거의 利用되지 않았다.

部分까지 同一한 企業에 포함시켜 營爲하거나 事業性 없는 分野에 進出함으로써 企業의 效率性이 沮喪되는 問題點이 있었다. 그래서 IMF 危機 이후 韓國의 企業은 企業構造調整(restructuring)에 의한 소위 "군살 빼기" 作業을 大大的으로 施行하였다.

이를 法制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企業分割에 관한 條項을 商法에 新設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簡易合併 또는 小規模合併 등의 제도를 새로이 導入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바 있다.

또한 公正去來法에서는 企業構造調整을 促進하기 위하여 1999年 2月의 法改正에서 從前의 持株會社(holding company)設立의 禁止를 解除하였다. 다만 系列會社를 擴張하는 手段으로 지주회사를 利用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일정한 設立要件을 두어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同法 第8條~第8條의 3).

4. 資金調達制度의 改善

韓國에서 株式會社의 主된 資金調達源은 銀行 등으로부터의 借入, 株式의 發行, 會社債의 發行 등이다. IMF 經濟危機 以後 企業의 過多한 借入經營이 企業의 財務構造와 競爭力을 惡化시키는 原因이 되었다는 指摘이 있었다. 이에 따라 公正去來法에서는 특히 大規模企業集團의 경우 系列會社間 債務保證을 全面的으로 禁止하는 極端의 處方을 구사했다. 또 IMF 以後 기업의 慢性的인 過多借入을 줄이기 위하여 IMF 등의 勸告에 따라 政府當局은 高金利政策을 施行하였다.[10]

이에 따라 借入金이 많은 企業들은 기업의 運營資金을 確保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피말리는 "돈(錢)과의 戰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같은 企業環境變化는 企業의 資金調達方式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企業들은 資金調達費用이 비싼 借入金 대신 證券市場을 통하여 資金을 調達하는 直接金融 쪽으로 方向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韓國 企業은 財務構造의 健實化를 이루는 契機가 되었다.[11]

---

10) 이에 따라 年間 最高利率을 25%로 制限하는 利子制限法을 廢止하였다.

11) 요즈음은 이 당시 發行된 過多한 株式物量에 의한 供給過剩이 現在 證券市場에서 株價上昇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표 3> 上場會社의 財務狀況

(單位 : 10億원, %)

年	會社數	資産總計	負債總計	資本總計	安定性 關聯指標		
					自己資本比率	負債比率	借入金依存度
1995	584	263,041.3	189,663.7	73,397.5	27.9	258.4	49.3
1996	594	319,806.6	230,029.9	89,776.7	28.1	256.2	46.3
1997	611	374,651.7	273,777.3	100,874.4	26.9	271.4	48.5
1998	597	488,285.6	381,425.0	106,860.6	21.9	356.9	54.4
1999	575	486,278.5	364,389.8	121,888.7	25.1	299.0	51.6

資料 : 證券去來所

<표 4> 韓國 企業의 資金調達 狀況

(單位 : 百萬원)

年	株式					會社債	合計
	企業公開		有償增資	KOSDAQ 公募	其他 公募		
	募集	賣出					
1989	1,468,558	1,582412	11,124,538		493,678	6,959,035	21,628,221
1990	315,709	20,314	9,563,999			11,083,555	14,001,386
1991	226,894		2,740,344		280,000	12,740,679	15,427,751
1992	81,680		1,711,188		557,021	11,137,260	13,487,149
1993	181,245		2,788,862		288,664	15,598,864	18,857,635
1994	579,524		5,378,678		289,590	20,033,160	26,280,952
1995	531,010	49,132	5,608,690		102,478	23,581,230	29,847,740
1996	1,391,438		3,651,522		242,868	29,902,514	35,188,342
1997	479,299		2,676,317	179,372	54,027	34,322,121	37,711,136
1998	36,782		13,452,087	167,644	501,555	55,970,299	70,128,367
1999	1,720,116		33,464,772	4,531,383	1,435,556	30,671,444	71,823,271

資料 : 金融監督院

5. 經營成果에 대한 報償體系의 構築

1999年 改正商法에서는 美國의 株式買受選擇權制度(stock option)를 導入하였다.[12] 이

12) 1997年 改正 證券去來法에서는 上場法人 등 일부 特殊法人에 한해 Stock Option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9年 改正商法에 의하여 이 제도가 一般化되었다.

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게 將來 一定한 時期에 一定한 價格(行使價格)으로 그 會社의 株式을 買受(또는 抛棄)할 수 있는 權利(option)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買受選擇權을 行使하는 시점의 將來의 株價가 行使價格보다 높기 위해서는 經營實積이 좋아야 選擇權을 行使할 利益이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 制度의 趣旨는 會社 任職員의 創意力을 鼓舞시키고 經營實積으로 높이기 위한 補償體系(incentive)를 構築하는 의미를 지닌다.[13] 이 制度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업의 實積改善에는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小規模株式會社에 適合한 새로운 企業法制의 摸索

한국의 株式會社制度는 덩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大規模會社를 念頭에 둔 것이 商法制定當時의 立法意圖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와는 달리 韓國의 企業은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보다는 株式會社를 選好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韓國에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취하는 것이 적합한 家族單位의 零細한 企業조차도 株式會社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14] 그런데 規模가 零細한 會社가 商法에 規定된 대로 株式會社를 運營하려면 당해 회사에 많은 負擔이 된다. 이 때문에 이들 企業은 법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便法的으로 株式會社를 運營하는 事例가 많았다.

제도와는 상당하는 거리를 보이는 이 같은 企業現實을 直視하여 1998年의 改正商法에서는 資本金이 5億원에 未達하는 規模가 작은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1人 또는 2人만을 두더라도 無妨하다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組織運營의 費用負擔을 줄여주었다(同法 第383條 第1項 但書).[15]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大會社와 小會社를 區分하여 立法하는 方案이 論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立法에 反影되지 않고 있다.[16]

---

13) 이와는 別途로 韓國에서는 從業員持株制度를 두고 있다. 從業員持株制度는 經營實績에 관계없이 從業員(勤勞者, 職員) 모두에 대하여 該當會社의 新株引受權을 附與하는 제도로, 經營成果에 連動된 Stock Option제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14) 이는 有限會社가 繁盛하고 있는 獨逸이나 日本과는 다른 점이다.

15) 商法에 의하면 株式會社의 理事는 最低 3人 以上이어야 함이 原則이다(同法 第383條 第1項 本文).

16) 다만 商法과는 別途로 證券去來法은 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에 대하여 特別規定을 두고 있다. 이들 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은 餘他의 企業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大規模의 會社이다. 또 公正去來法에서는 大規模企業集團에 관한 特別規定을 두고 있다.

V. 結 言

(1) 現在 韓國의 企業法制는 過渡期的 狀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韓國에서의 企業運營은 法보다는 政府의 政策과 經營主의 企業家情神에 依存하는 바가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다. 開發初期段階에서는 이러한 方式이 그 나름대로 成果가 있었지만, 企業과 經濟規模가 巨大化되고 複雜化 · 專門化되고 있는 現時點에서는 이 같은 方式이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

(2) 이제는 韓國의 企業經營도 점차 法의 領域으로 들어와 法的 規律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할 可能性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企業經營을 規律하는 法規範의 制度的 內容을 어떻게 設計하고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韓國 企業法과 經濟關聯法이 當面하고 있는 核心課題는 韓國의 企業現實에 附合하면서 同時에 國際基準(global standard)에 적합한 새로운 規範體系, 그리고 效率性(efficiency)과 衡平性(equity)을 同時에 달성할 수 있는 規範體系를 摸索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